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38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연희・박상혁・문진석
김정호・임미애・박용갑
한민수・박정현・이정문
박홍배・이춘석・송재봉
복기왕・어기구・안태준
윤종군・김기표・최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 다만, 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